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우리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각종 홍보행사(이벤트) 등을 실시함에 있어 선거관련법에 저촉되는 논란을 사전 차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보상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종로구 홈페이지 내에서 홍보행사(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내용 신설 (안 제16조)

III.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역정보화 촉진과 우리구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04년 7월 30일 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구의 주요시책과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사이버 민원실 운영 등 열린 행정 구현과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유도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종로구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홍보 행사(이벤트)시 보상금 집행에 따른 선거법 저촉여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등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우리구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과 금년도 편성 예산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2005년도 홈페이지 이벤트 및 정보검색대회 보상금 예산액 : 6,700천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59쪽)

-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선거일전 1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제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시기 및 정황에 따라 당해 법 규정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위·적법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을 두더라도 선거법에서 정한 특정 기간 중에서의 행위금지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IV. 관계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 2004. 3.12, 법률 제7189호)

第33條 (選舉期間) ①選舉別 選舉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選舉는 23日
2.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는 14일

③“選舉期間”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舉日까지를 말한다.

第86條 (公務員 등의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公務員(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및 第6號에 規定된 機關 등의 常勤 任·職員,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鄉土豫備軍小隊長級 이상의 幹部,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職員 및 이들 團體 中(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代表者 또는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健康保險公團의 常勤 任·職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選舉期間중 所屬職員 또는 選舉區民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法令이 정하는 외의 金品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冠婚喪祭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행위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各目的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事業說明會, 公廳會, 職能團體모임, 體育大會, 敬老行事, 民願相談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後援하는 행위
가. 法令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後援하도록 規定된 행사를 개최·後援하는 행위

나. 特定日·特定時期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다. 天災·地變 기타 災害의 救護·復舊를 위한 행위

라. 職業輔導教育 또는 有償으로 실시하는 敎養講座를 개최·後援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目 내지 마目に 준하는 행위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5. 統·理·班長의 會議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天災·地變 기타 災害가 있거나 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12>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第112條 (가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이 法에서 “寄附行爲”라 함은 당해 選舉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舉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選舉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舉區民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 바. (생략)

2. 의례적 행위

가. ~ 아. (생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 마.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공직선거관리규칙**(일부개정 2004. 8. 2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4호)

제47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4호 단서에서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등)제2항제2호 가목·마목·바목·아목 및 제3호의 행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 2004. 3.12, 법률 제7189호)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2. 의례적 행위

-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2호 다목 내지 바목·아목, 제3호, 제4호 다목 및 제5호의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일부개정 2004. 8. 2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4호)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항

2. 의례적인 행위

다.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라.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후보자 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바. 정기적으로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여 온 자가 종전의 범위안에서 시상하는 행위

아. 구·시·군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 또는 환경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한다)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다.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다.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관계법령·조례·규칙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정한 정관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또는 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행위 또는 우수직원을 포상하는 행위

4. 법 제8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그 기관·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에 따른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행위. 다만,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후보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